

# 명예박사학위 수여 지침

제정 2015.11.12

개정 2015.11.24

개정 2019.11.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원학위수여규정’ 제16조(명예박사학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박사학위는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발전이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3조(담당부서) 명예박사학위 수여 관련 업무는 학사관리부서에서 총괄한다.(개정: 2019.11.1)

제4조(수여방법) ① 명예박사학위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1. 대학내 공고를 통해 후보 추천을 받으며, 후보 추천 대상은 학문적으로 뛰어나거나 사회적으로 임팩트를 준 사람 중 학생들의 본(Role Model)이 되고,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리더로 한다. 단, 추천권자는 총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 전문대학원장으로 한다.
2.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한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주요 공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포함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한다.
3. 대학원장은 명예박사학위 수여의 후보자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심의하고 수여할 학위종별을 결정한다.
4. 명예박사 학위수여의 의결은 대학원위원회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5.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명예박사 학위수여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6. 명예박사학위는 본 대학의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명예박사학위 선정에 관한 사항은 내부 논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5조(학위기 양식) 명예박사의 학위기 양식은 ‘대학원학위수여규정’ 별지서식 2 내지 2의2를 따른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